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2010년 12월3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자료문의 : 산업경제정책과 문승욱 과장, 이덕미 주무관 (02-2110-5118)

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 전면 개정

- 기술융합, 정보통신, 에너지·자원분야의 핵심기술 대폭 확대지원 -

□ 지식경제부는 **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의 본격화 등 변화하는 산업기술 트랜드를 반영하고 기술분류체계도 정비하기 위하여**

○ **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를 전면 개정**하기로 함

□ 상기 고시는 07년2월 이후 4년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12.31일자로 고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

○ 해당 고시로 지정된 기술·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**입지 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**을 받을 수 있음

□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·제품을 31개 분야 2,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하여 **분류체계를 정비**

○ 핵심기술 단위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포괄적 개념에 따른 **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** 부문별 상세접근이 가능케 함

첨단고시 기존안	첨단고시 개정안
분야·부문(10개) → 소분류(100개) → 기술·제품(473개)	분야(31개) → 대분류(139개) → 중분류(431개) → 소분류(1,009개) → 핵심기술(2,654개)

□ 개정안에는 특히, **IT융합, 나노융합, 홈네트워크·정보가전분야** 등 **기술융합화를 구현**하는 기술이 대거 확대(신규기술 547개, 전체 신규기술의 45%)되어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**정부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**질 것으로 기대됨

* 추가된 기술 : 원격차량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,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기술, 나노크기의 잉크형성을 위한 노즐 등

○ 또한, 기술진보속도가 빠른 LED 등 **정보통신 분야[1]와 에너지·자원 분야[2]**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한층 **세분화**되고 **확대**됨

1) **(정보통신)** 분야부문 1, 소분류 9, 기술·제품 25 → 분야 10, 대분류 41, 중분류 149, 소분류 399, 핵심기술 491 : 384개 신규기술(전체 신규기술의 32%)
2) **(에너지·자원)** 분야부문 1, 소분류 9, 기술·제품 25 → 분야 5, 대분류 15, 중분류 63, 소분류 139, 핵심기술 1286 : 201개 신규기술(전체 신규기술의 17%)

* 추가된 기술 : 오일샌드 매장량 평가기술, 석탄계 자원화기술,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안정화 처리기술 등

○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이미 **상용화된 310개 기술은 삭제**

* 삭제된 기술 : 터치스크린, 전자지불시스템(전자화폐), 다기능컨버터, 불연 또는 난연 변압기와 리액터, 광·자기기록매체, 카드류(홀로마그네틱·IC·광·RF-ID 카드), 에어백 등

□ 아울러,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하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개제한 등 민원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**민원인의 편의를 높였음**

<첨부1>「첨단기술 및 제품」고시 개정안
<첨부2>「첨단기술 및 제품」고시 별표1 분류체계

「참고1」 첨단고시 제도현황
「참고2」 첨단고시 지원제도

첨부1 **「첨단기술 및 제품」 고시 개정안**

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『산업발전법』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)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
2.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
3.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·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
4.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, 생산성향상,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

제3조(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)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) 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

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(이하 “처리기간”이라 한다)에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④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,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첨단기술 및 제품여부 검토·확인)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
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,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확인서 발급)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[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-17호(2007.2.15)]는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 쪽)

첨단기술·제품 확인신청서

접수 번호		처리 기한
신청 구분	□ 신규 □ 연장	14일

신청자	기 관 명				대 표 자		
	주생산품				업 종		
	종업원수	명	매출액	백만원	신청사유	세제, 입지, 자금, 기타()	
	기관유형	□ 대기업 □ 중소·중견기업 □ 개인사업자 □ 기타					
	주 소					사업자 등록번호	
	실무 책임자	소 속		직 위		성 명	
		전 화 (휴대전화)	()	팩스		전자 우편	
신청기술·제품	기술명칭						
	기술분야	분 야				핵심 기술	
		대분류					
		중분류					
		소분류					
	기술 키워드	※ 신청 기술에 관한 키워드(Key Word)를 3개 이상 기재					

「산업발전법」 제5조 및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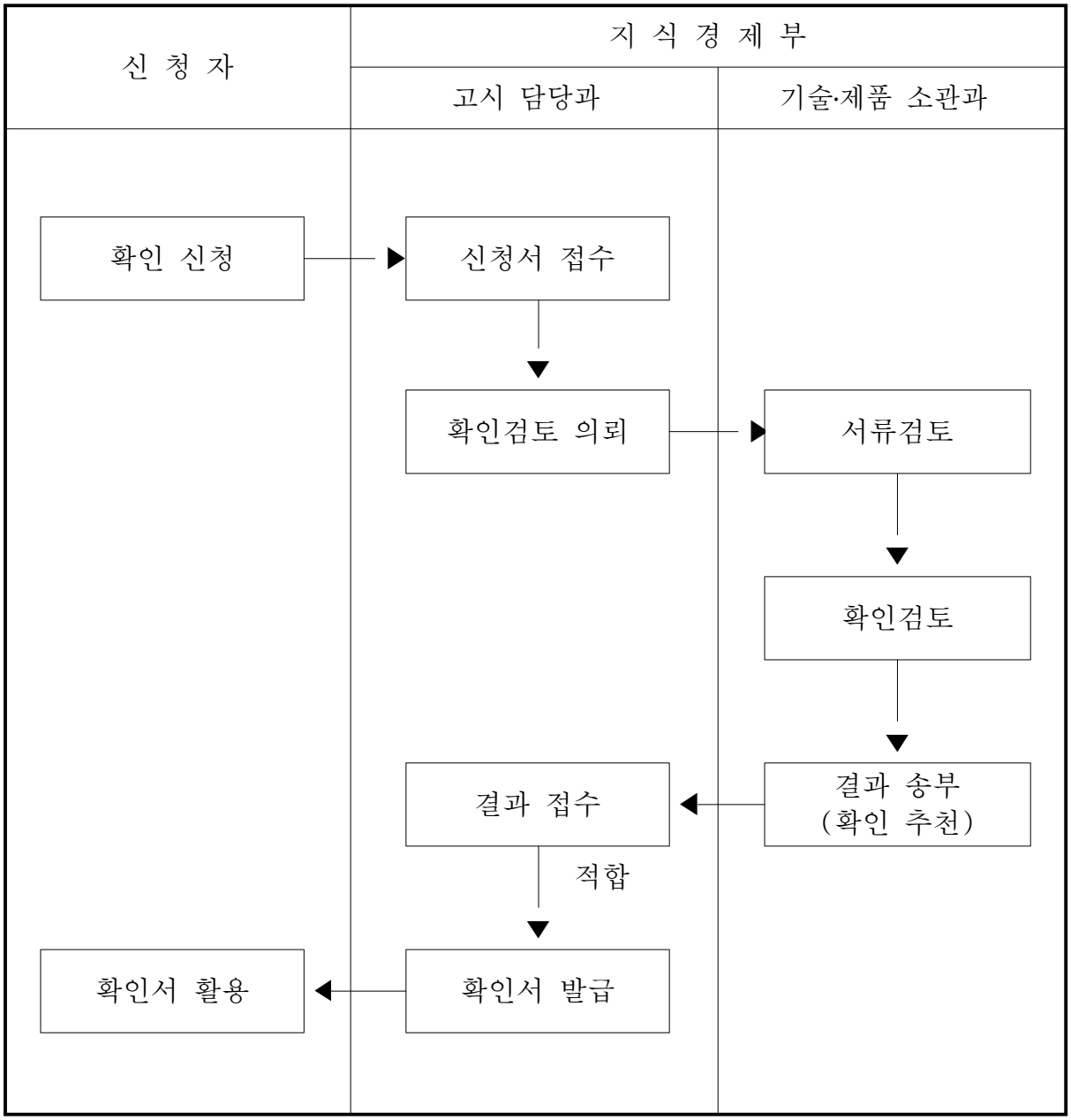
신 청 자 : (인)

지식경제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	수수료
	1. 신청기술 및 제품 설명서(별지 제1-1호 서식)	–

(뒤 쪽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별지 제1-1호 서식]

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

1. 신청 기술의 개요

2. 신청 기술의 기술성

3. 신청 기술의 시장성

4. 산업재산권 현황(해당하는 경우)

5. 외부기관의 시험·인증 등(해당하는 경우)

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 작성방법 (별지 제1-1호 서식 관련)

※ 본 설명서는 첨단기술·제품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,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.

1. 신청 기술·제품의 개요

- 신청 기술의 명칭 및 개요, 특징
- 신청 기술의 개발 기간, 과정, 방법 등 요약

2. 신청 기술·제품의 기술성

-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
-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의 우수성
-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의 수준(정량화하여 기술)
- 핵심요소기술의 내용
-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(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등)

※ 비교대상 기술이 없는 경우 "해당사항 없음"으로 표기

3. 신청 기술·제품의 시장성

-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
- 신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 제품 대비 우수성을 기술
-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, 동종 기업의 개발 현황,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
- 수출기대, 수입대체,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과

4. 지식재산권 현황(해당하는 경우)

-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아래 표에 맞추어 기재

No	명칭	권리자	등록일	등록번호

※ 증빙서류(특허 등록증,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,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) 첨부

※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"해당사항 없음"으로 표기

5. 외부기관의 시험·인증 등(해당하는 경우)

-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시험·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

※ 해당 증빙서류 첨부

-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

(예) 신기술(NET) 인증, 신제품(NEP) 인증,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,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, 이노비즈 인증 등

※ 해당 증빙서류 첨부

[별지 제2호 서식]

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

확인번호 : 제 호

기 관 명 : 대표자명 :

주 소 :

귀 사의 ()은
『산업발전법』 제5조 및 『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』 고시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.

확인일자 :

지 식 경 제 부 장 관

참고 1 첨단고시 제도현황

□ 법적 근거 : 산업발전법 제5조

○ “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를 정하여 고시”

□ 연혁

○ ‘89년 : 「첨단기술산업」을 최초로 고시(7개부문 63개 업종, 상공부 고시 제89-39호)

○ ‘94.4월 :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로 명칭변경 등 확대 개편

○ ‘96.10월 : 추가 확대 개편(157개 부문 → 164개 부문)

○ ‘99. 6월 :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최초 고시

○ ‘02. 3월 : 개편(총8개분야 164개 부문 354개 기술 → 총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기술) * 물류·유통분야 추가

○ ‘07.2월 : 개편(총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기술→총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기술) * 첨단 문화·컨텐츠분야 추가

□ 선정기준(산업발전법제5조제2항 및 현행 고시)

○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

○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

○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

○ 자원 및 에너지절약, 생산성향상, 환경보전효과가 큰 분야

참고 2 첨단고시 지원내용

지원 사항	법령 등 규정	주요내용
법인등록세 중과 제외	·지방세법 제138조의 단서조항 ·동법시행령 제101조 제①항 제7호	·대도시(과밀억제권역) 지역내 공장 신·증설 및 법인설립·이전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(300%)의 예외 인정
법인세·소득세 감면	·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·동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3호	·법인세·소득세 첫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*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'12년12월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
	·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·동법시행령 제 116조의 14 제4호	·법인세·소득세 첫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*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'12년12월31일까지 입주한 기업
과밀억제지역내 입지지원	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4, 제22조, 제22조의2 ·동법시행령 제4조의4 제2호, 제6조 제②항, 제26조 제2호 가목	·과밀억제지역이라도 아파트형 공장 신·증설 허용
연구개발특구 입지지원	·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②항 제6호, 제14조 제①항, 제15조 ·동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	·대덕연구개발특구 국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매각 등에 특례, 전문연구인력 지원 등
자유무역지역내 입지지원	·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0조 ·지경부 공고 등	·건물 또는 토지의 무상임대 등 임대료 감면 혜택
투자진흥지구 입지지원	·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6조, 제217조 ·동법시행령 제36조제①항 제10호	·투자진흥지구로 지정, 국·공유재산 사용·수익·매각 등에 특례, 용지 매입비의 융자, 토지등 임대료 감면 등 * 첨단산업중 전자,전기,정보,신물질,생명공학에 한정
	·동·서·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25조, 제27조 제①항 ·동법시행령 제33조 제①항 제12호(법령상 근거만)	
수입 선급금·대출금 손실 보상	·무역보험공사 자체 수입보험규정	·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 손실 보상(부보율 95%, 중소기업은 100%) ·금융기관이 첨단제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때 손실 보상(부보율 100%)
수입자금 대출	·수출입은행의 자체여신규정	·수출입은행에서 첨단제품 수입금액의 80%(중소기업은 90%) 내에서 대출